

## 질문 #1: 선거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현장을 개정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2021년 1월부터 시장, 공익 옹호관(Public Advocate), 감사원장, 자치구 장(Borough President)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예비 선거와 보궐 선거에서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길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는 탈락하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가 선택한 다음 순위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이 두 후보만 남을 때까지 반복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본 제안은 시장, 공익 옹호관 및 감사원장에 대한 별도의 2차 예비 선거를 없앨 것입니다.

뉴욕시 선출직의 공석이 생긴 시점과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보궐 선거는 보통 공석 발생으로부터 80일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현재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자치구 장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45일 후, 시장의 경우에는 60일 후에 실시됨).

시의회 후보들이 다음 예비 선거 투표에 나오기 위해 청원 서명을 받기 전에 시의회 지구 경계 설정이 완료되도록 절차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 절차는 10년마다 하게 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 질문 #2: 민원심사위원회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현장을 개정하게 됩니다.

공익 옹호관이 지명하는 1명,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간사가 공동으로 지명하는 1명(위원장을 맡음)을 추가하여 현재 13명인 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시장이 고려해서 지명하는 대신 시의회가 직접 CCRB 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서면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CRB의 연간 인건비는 경찰국의 정복 경찰관 수의 0.65%에 해당되는 CCRB 인원 수를 충당할 정도가 필요합니다.

경찰국장(Police Commissioner)이 CCRB 또는 경찰국 감찰 부국장 또는 부국장보(Police Department Deputy Commissioner for Trials or Assistant Deputy)가 권고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는 경우, 경찰국장은 CCRB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RB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 조사 또는 처리 과정에서 모든 중요한 진술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CCRB는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다수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사에 관한 기록을 CCRB 집행이사에게 제출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 질문 #3: 윤리와 관리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현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의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고위공무원이 퇴사한 후 2년간(현재는 1년) 근무했던 기관(또는 정부 지부)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선출직 공무원 또는 시 직원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시장이 선정하는 이해충돌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 COIB) 위원 두 명을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1명과 공익 옹호관이 임명하는 1명으로 대체합니다.

COIB 위원들이 지역 선출직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선거 주기별 위원의 최대 기부금 한도를 후보자들이 시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줄입니다(400달러 이하, 공직에 따라 다름).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프로그램의 시 전역 책임자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며, M/WBE의 시장 사무소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시의 공사 고문(Corporation Counsel)은 시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 질문 #4: 시 예산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현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는 예기치 않은 재정난 해소와 같은 향후 용도에 대비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수익안정기금, 즉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불황대비기금 사용을 위해 주법 변경도 필요하게 됩니다.

공익 옹호관과 자치구 장을 위한 최소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무소의 예산은 물가상승률 또는 시의 총지출예산(특정 요인 제외)의 변동률 중에서 작은 쪽에 맞춰 연간 조정된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4월 26일(6월 5일이 아님)까지 비재산 세수 추정치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도 업데이트된 예상치를 제출할 수 있지만, 5월 25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예상치가 재정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이 시의 재정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예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된 예산 수정안은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질문 #5: 토지 이용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현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표준토지이용검토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 대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서가 공청회를 위한 인증을 받기 최소 30일 전에 도시계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 DCP)는 해당 자치구 장, 자치구 위원회(Borough Board), 지역사회 위원회(Community Board)에 프로젝트 요약본을 송부하고 웹사이트에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DCP로부터 공청회를 위한 인증을 받은ULURP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지역사회 위원회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6월에 인증된 신청서의 경우 90일이(현재는 60일), 7월 1일 ~ 7월 15일에 인증된 신청서의 경우 75일이 적용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